

인천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3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21. 3. 3

판 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사실, 피고가 2009. 6. 23.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1. 8. 10. 인천 서구 E외 4필지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2. 3. 29.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 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진수